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연수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94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연수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성일종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3.

다. 회부연월일 : 2024.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연수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연수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15조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²⁾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러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1조(교육훈련)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관련 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연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연수원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재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시설과 표준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연수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³⁾,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⁴⁾ 역시 자발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2조(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党性), 비종파성(非宗党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수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자원봉사 연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정당국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가가 직접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국가주도로 지원·운영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욕구와 선호가 다양해지고,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 강화가 강조됨에 따라 자원봉사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연수시설은 현장에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연수시설의 설치·운영은 필요하나,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라, 홍보·기록 등 자원봉사자 인정과 예우의 기능을 더함으로써 연수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임.

참고

자원봉사센터 주관 교육 통계⁵⁾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구분	계		기본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		리더교육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23년	10,373	870,503	5,027	737,753	5,346	132,750	-	-
2022년	136,765	671,662	131,357	556,084	4,321	89,839	1,087	25,739
2021년	114,124	537,866	109,435	447,260	4,030	74,006	659	16,600
2020년	36,072	526,371	31,751	428,903	3,681	80,333	640	17,135
2019년	19,005	791,452	11,522	610,925	6,240	134,488	1,243	46,039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내용>

구분	기본교육	전문교육	리더교육
교육대상	신규 자원봉사자	신규 및 기존 자원봉사자	단체장 및 팀 리더 등
교육내용	자원봉사의 이해 등 기초교육	교육 및 전문분야 지식 등 예) 문화해설, 상담 등	리더쉽, 팀코치 교육 등
교육시기	연중		

<자원봉사관리자 대상 교육 현황>

구분	센터관리자			수요처 관리자			거점 관리자		
	횟수	시간	인원	횟수	시간	인원	횟수	시간	인원
2023년	5,156	45,338	13,490	3,819	-	22,951	655	-	7,452
2022년	4,864	39,133	1,743	4,703	-	20,925	234	-	2,059
2021년	4,503	36,859	1,703	3,957	13,370	18,335	497	2,726	4,098
2020년	3,136	35,031	3,157	4,528	10,685	14,511	459	4,209	4,124
2019년	3,460	43,409	2,361	3,036	7,339	19,803	563	5,460	6,859

5)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민간위탁하는 방식 등으로 설치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음. 또한, 이와 별개로 민간 자원봉사단체도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자원봉사관리자 대상 교육 내용>

교육대상	센터관리자	수요처 관리자	거점 관리자
교육내용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 자원봉사와 인권 등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등	활동가 양성, 역량 강화, 소양교육 등
교육시기	연중		

문 의 처

02)6788-5337